



제422회국회(임시회)
제 1 차 교 육 위 원 회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기금운용심의회의 외부 전문가 인원 상향 조정〉

■ 김민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233호)

2025. 2.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민전 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1. 3.
3. 회부연월일 : 2025. 1.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투자 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인 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다수의 사립대학이 기금의 적립금을 활용한 금융투자에서 상당한 손실을 입은 바 있는데, 해당 학교의 대부분은 기금운용심의회에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를 1명만 두고 있어 투자 심의의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바 있음.

이에 기금운용심의회에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인 위원을 현행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 포함하도록 상향 조정함으로써 사립대학의 재정건전성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32조의3).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기금운용심의회에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를 1명에서 2명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등) ① (생략)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교원, 직원 및 재학생은 각각 2명 이상, 제2호에 따른 외부 전문가는 <u>1명</u>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② ----- ----- ----- -----. ----- ----- ----- ~~2명~~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1. 기금운용심의회 현황

기금운용심의회는 사립학교의 적립금 관리와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제32조의3에 따라 설치된 법정기구¹⁾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함.

- 1) 「사립학교법」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등)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②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교원, 직원 및 재학생은 각각 2명 이상, 제2호에 따른 외부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하는 기금은 교비회계, 법인회계 등에서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수(改修)·보수(補修),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적립금을 의미²⁾함.

기금운용심의회는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를 각 심의회마다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함. 이는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진출된 적립금 상당액을 제외한 적립금은 증권의 취득이나 대학교육기관의 소속 교원 또는 학생이 개발한 신기술 특허 등으로 창업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가능한바, 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보임.

전문가는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직원 및 재학생
2.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
3. 그 밖에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 ③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을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수(改修)·보수(補修),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은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수·보수 목적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② 적립금은 원금보존적립금과 임의적립금으로 구분하고, 성격에 따라 연구적립금·건축적립금·장학적립금·퇴직적립금 및 그 밖에 구체적인 목적을 정하여 적립하는 특정목적적립금으로 구성한다.
- ③ **적립금은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그 적립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진출된 적립금 상당액을 제외한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법인에 투자할 수 있다.
 1. 적립금의 2분의 1 한도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의 취득
 2. 적립금의 10분의 1 한도에서 해당 대학교육기관의 소속 교원 또는 학생이 개발한 신기술 또는 특허 등으로 창업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 ④ ~ ⑨ <생략>

2. 외부 전문가 증원의 필요성

사립대학의 자산운용에 대한 문제점은 꾸준히 지적³⁾되어 왔음. 이에 대응하여 사립대 적립금의 자산운용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 2017년, 기금운용심의회 설치를 명문화하고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⁴⁾이 통과되었으나, 이후에도 다수의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이 금융투자에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임.

< 2021~2023년 교비회계 및 법인회계 별 금융수익 투자수익 현황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투자손실 교비회계	40개	45개	39개
수익중립 교비회계	8개	6개	5개
투자수익 교비회계	13개	9개	17개
교비회계 소계	61개	60개	61개
투자손실 법인회계	4개	6개	6개
수익중립 법인회계	0개	1개	0개
투자수익 법인회계	5개	2개	3개
법인회계 소계	9개	9개	9개

<자료 : 교육부>

반면, 기금운용심의회의 외부전문가 비율을 보면, 다수의 기금운용심의회가 외부전문가를 1명만 두고 있고, 기금운용심의회의 평균 인원이 증가 추세에 있음으로 인해 외부전문가 비율이 낮아지고 있음. 기금운용심의회의 회의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3) 사립대 적립금 투자로 280억 손실...경남대·중앙대·아주대 순, 2013.10.13., 뉴시스
8조 대학기금 '깜깜이' 운용...투자 시스템 구축 시급, 2017.6.19., 연합뉴스
사립대, 지난해 적립금 투자 '183억 손실', 2022.9.26., 이투데이

4) 의안번호 제2010049호, 대안

찬성으로 의결됨⁵⁾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경향은 사립대학의 기금운용에서 외부전문가의 영향력이 감소될 수 있음을 보여줌.

< 2021~2023년 교비회계 및 법인회계 별 기금운용심의회 외부전문가 현황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교비회계 외부전문가	1명	40개	45개	46개
	2명	19개	15개	15개
	3명	1개	0개	0개
기금운용심의회 평균 인원		8.72명	9.6명	9.57명
외부전문가 비율		15.49%	13.02%	13.01%
법인회계 외부전문가	1명	5개	9개	7개
	2명	3개	0개	2개
	3명	1개	0개	0개
	4명	0개	0개	1개
기금운용심의회 평균 인원		6.33명	9.11명	10.4명
외부전문가 비율		24.56%	10.98%	14.42%

<자료 : 교육부>

개정안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립대학의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 외부 전문가인 위원 수를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3. 검토의견

적립금 기금의 목적이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수(改修)·보수(補修),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 학교의 교육여건 향상에 있음을 고려할 때, 동 기금의 수익률 제고는 사립학

5)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9(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② 기금운용심의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또한, 기금운용은 회계, 재무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함에도 대다수의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이 교원, 직원, 학생,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므로 외부전문가의 비율 증가는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의 기금운용 성과가 낮은 현실을 고려할 때 필요한 방안으로 보여짐.

교육부는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전문가 비중 증가로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투명성 강화 및 사학기관의 재정 건전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외부전문가위원 상향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사립대학, 사학법인 등에서는 기금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모든 대학에 대한 외부전문가 확대는 기금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고,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전문가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에서는 선임의 어려움이 많으며, 외부전문가 확대와 재정건전성 향상과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88

※참고 : 사립대학 적립금 운용 관련 통계자료

① 사립대학 금융상품 투자현황

< 최근 5년간 사립대학 금융상품 투자 현황(교비회계) >

(단위 : 백만원)

구분	투자원금	평가액	수익율	비고(투자대학 수)
2019	1,530,813	1,524,433	-0.42	58
2020	1,621,017	1,639,418	1.14	59
2021	1,682,014	1,642,899	-2.33	61
2022	1,652,918	1,567,889	-5.14	60
2023	1,650,696	1,602,763	-2.90	61

※ '23년 61개 대학 기준,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평균 9.57명(외부 전문가 수 1명 46개, 2명 15개 대학)

② 기금운용심의회 운영 현황 ※ 2023회계연도 결산서 제출교 대상(단위 : 개, %)

○ 설치 현황

구분		대상	제출	설치 현황	
				설치	미설치
학교	대학	150		147	3
	대학원대학	40		24	16
	전문	124		119	5
	원격	20		18	2
	소계	334		308(92.2)	26(7.8)

○ 외부전문가 위원 구성 현황

5명	3명	2명	1명	0명	합계(대학 수)
1	2	68	236	1	308

○ 미설치 사유

구분		미설치 유형		
		적립금 미보유	기타*	소계
학교	대학	3		3
	대학원대학	14	2	16
	전문	5		5
	원격	2		2
	소계	24	2	26

* 이사회 재정소위원회에서 결정 등

③ 최근 5년간 누적적립금 현황

※ 전체 : 대학(대학원대학), 전문, 원격

(단위 : 억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교비회계	전체	105,259	105,721	107,693	108,855	112,932
	대학	79,184	79,661	81,740	83,863	87,329
	전문	24,992	24,923	24,766	23,757	24,318
	원격	1,082	1,137	1,188	1,235	1,285
법인회계	전체	7,998	7,166	7,170	7,524	7,103
	대학	7,923	7,090	7,070	7,250	6,815
	전문	75	76	100	274	288

④ 최근 5년간 교비회계 용도별 누적적립금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체	연구	7,811	7,643	7,698	7,641	7,699
	건축	54,650	55,211	56,146	57,130	59,615
	장학	16,473	16,233	16,334	16,485	16,916
	퇴직	1,695	1,622	1,581	1,506	1,529
	특정목적	24,630	25,012	25,934	26,095	27,173
	계	105,259	105,721	107,693	108,855	112,932
대학	연구	7,455	7,286	7,346	7,310	7,372
	건축	36,342	36,876	37,689	39,167	41,187
	장학	13,858	13,655	13,779	14,127	14,444
	퇴직	836	805	855	834	891
	특정목적	20,693	21,039	22,071	22,426	13,436
	계	79,184	79,661	81,740	83,863	87,329
전문	연구	338	340	334	313	309
	건축	17,543	17,525	17,624	17,092	17,508
	장학	2,565	2,527	2,503	2,305	2,416
	퇴직	845	802	709	648	613
	특정목적	3,702	3,729	3,596	3,400	3,472
	계	24,992	24,923	24,766	23,757	24,318
원격	연구	18	17	18	18	18
	건축	765	811	834	870	921
	장학	49	51	52	53	56
	퇴직	14	14	17	24	25
	특정목적	236	244	267	269	265
	계	1,082	1,137	1,188	1,235	1,285

⑤ 최근 5년간 법인회계 용도별 누적적립금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체	연구	121	121	121	122	125
	건축	3,396	3,238	3,668	3,176	2,726
	장학	127	134	182	137	138
	퇴직	34	36	30	30	32
	특정목적	4,320	3,637	3,169	4,059	4,081
	계	7,998	7,166	7,170	7,524	7,103
대학	연구	121	121	121	122	125
	건축	3,339	3,181	3,610	3,112	2,660
	장학	122	130	150	135	134
	퇴직	34	36	30	30	32
	특정목적	4,307	3,622	3,158	3,851	3,864
	소계	7,923	7,090	7,070	7,250	6,815
전문	연구	-	-	-	-	-
	건축	57	57	58	64	66
	장학	5	4	32	2	4
	퇴직	-	-	-	-	-
	특정목적	13	15	10	208	217
	소계	75	76	100	274	288